

청원휴가 제도 신설 안내

□ 출산전후휴가(미숙아) 근로기준법 제74조

○ 주요내용

구 분	세부사항				
대 상	• 미숙아 출산 여직원 - 미숙아 :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2.5Kg 미만 영유아				
휴가일수	• 100일 (70일 유급, 30일 무급) *휴무일/휴일 포함				
사용방법	• 복무시스템으로 대상 직원 직접 신청 → 직책자 서류 증빙 검토 후 승인 必 - 『출산_여직원_출산전후(단태아) ^{90일} 』 신청 후 『출산_여직원(미숙아) ^{10일} 』 추가 신청 - 『출산_여직원_출산전후(단태아) ^{90일} 』 종료일과 바로 이어서만 사용 가능 <table><tr><td>ERP</td><td>HR(개인업무)> 복무/출장> 복무신청> 휴가> 청원휴가> 출산_여직원(미숙아)</td></tr><tr><td>마비서</td><td>휴가> 청원 > 출산_여직원(미숙아)</td></tr></table>	ERP	HR(개인업무)> 복무/출장> 복무신청> 휴가> 청원휴가> 출산_여직원(미숙아)	마비서	휴가> 청원 > 출산_여직원(미숙아)
ERP	HR(개인업무)> 복무/출장> 복무신청> 휴가> 청원휴가> 출산_여직원(미숙아)				
마비서	휴가> 청원 > 출산_여직원(미숙아)				
시행일자	• 2025.3.28(금) - 출산전후휴가(단태아) 종료일이 3.27(목) 이후인 경우 추가 10일 사용 가능				

【참고】 관계법령

근로기준법 제 74조(임산부의 보호)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<생략>

□ 배우자 유·사산휴가 2024년 4분기 중앙노사협의회

구 분	세부사항				
대 상	• 배우자가 유·사산한 남직원				
휴가일수	• 3일(유급) *휴무일/휴일 제외				
사용기한	• 사유발생 20일 이내 사용 (예. 4.1일 사유발생시 4.20일까지 3일 사용완료)				
사용방법	• 복무시스템으로 대상 직원 직접 신청 → 직책자 서류 증빙 검토 후 승인 必 <table><tr><td>ERP</td><td>HR(개인업무)> 복무/출장> 복무신청> 휴가> 청원휴가> 배우자 유·사산휴가</td></tr><tr><td>마비서</td><td>휴가> 청원 > 배우자 유·사산(3일)</td></tr></table>	ERP	HR(개인업무)> 복무/출장> 복무신청> 휴가> 청원휴가> 배우자 유·사산휴가	마비서	휴가> 청원 > 배우자 유·사산(3일)
ERP	HR(개인업무)> 복무/출장> 복무신청> 휴가> 청원휴가> 배우자 유·사산휴가				
마비서	휴가> 청원 > 배우자 유·사산(3일)				
시행일자	• 2025.3.28(금) ※ 단, 3월중(3.1~3.28) 사유 발생자 限 4.18(금)까지 사용 가능				